

	<b>보도 설명</b>			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21.4.8.(목)
<b>책임자</b>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성기(02-2100-2630)	<b>담당자</b>	김영근 사무관 (02-2100-2642)	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범준(02-3145-5700)		정재승 팀장 (02-3145-5697)	

**제목 : 金통장 등 특정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 
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 
[한국경제 4.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**

**1. 기사내용**

- 한국경제는 4.9일자 「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... 투자자 울리는 禁소법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① “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윌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(金)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... ‘공격투자형’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.”
  - ② “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.”
  - ③ “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,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.”고 보도했습니다.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**

- ①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  -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‘소비자에 권유’하는 경우에 적용되며,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< 관련 규정 >  
 (금소법 제17조제3항)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**계약 체결을 권유**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‘3가지’ (계약서, 약관, 설명서)입니다.
- ③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.
-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 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합병관리청 콜센터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